

문화유산의

생력
발권,
력을

들이
상호
통의
자치
광역
개발
업을
자치
추한
해야
라
며,
로

업이란
으로 규정할
제 간, 기초자치단체
연계·협력도 포함하는 실
고령화·저성장 시대에는 자치단체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시설)의 융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
역량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보다 효과
적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투자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공공투자의
결합생산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

II.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실태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지역발전정책의 권역유형별로 시범공모사업의 형태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총 62개 사업에 대해 1,8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신규사업 5개를 추가하여 67개 사업에 대해 1,4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시·도의 1차 평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친 후, 관계부처가 연계협력도,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2010년 자치단체가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339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두 차례 평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최종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 중 12개 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광특 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전·후방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광역위원회가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지경부 평가, KIAT 평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총 3년 이내인데, 1년 마다 사업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0년 30개 사업에 대한 540억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한편 초광역개발권의 연계협력사업은 동서남해안 인접 시군,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연계협력사업의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기초생활권 (시·군)	-	83억원 (10개)	123억원 (12개, 신규 2개)	지역계정
광역경제권 (시·도)	540억원 (30개)	1,000억원 (46개, 신규 16개)	1,150억원 (46개, 신규 150억)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광역권간)	67억원 (5개)	148억원 (6개, 신규 1개)	215억원 (9개, 신규 3개)	광역계정
계	607억원 (35개)	1,231억원 (62개)	1,488억원 (67+α)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의 평가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첫째,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과정에 두고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다보니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고 계획이 많아 발굴건수에 비해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실행가능성이 낮아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은 시간을 정해두고 발굴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연계협력사업 예산이 자치단체 단독사업 예산과 동일한 계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원한도 내에서 굳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계협력사업을 기획하기 보다는 단독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할 경우 당해 사업목적에 구속받아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곤란하다.

셋째, 군특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재원분담 등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위원회의 추진역량이 부족하고, 광역위원회와 시도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연계협력사업 발굴이나 협의·조정 등의 역할 수행이 미약하며, 부처마다 사업추진방식도 서로 달라 자치단체에서 다수 부처에 관련된 융복합형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인센티브도 미약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계협력사업 예산이 자치단체 단독사업 예산과 동일한 계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원한도 내에서 굳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계협력사업을 기획하기 보다는 단독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할 경우 당해 사업목적에 구속받아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곤란하다. 넷째, 군특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재원분담 등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위원회의 추진역량이 부족하고, 광역위원회와 시도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연계협력사업 발굴이나 협의·조정 등의 역할 수행이 미약하며, 부처마다 사업추진방식도 서로 달라 자치단체에서 다수 부처에 관련된 융복합형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Ⅲ.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방안

원칙적으로 협력은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여 합의 형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형성에 이르는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동기유발 → 협의·조정 → 합의형성 → 성공모델 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전 자치단체에 연계협력사업을 정착시켜야 한다.

연계협력사업 발굴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계획수립 단계에 임박해서 연계협력사업계획수립이 줄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계획수립 단계 이전에 연중 발굴·협의·조정이 필요하며, 매년 사업의 발굴, 협의·조정, 합의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상시적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 상시적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협력대상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위원회는 지역별 협력대상자원 및 사업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를 유발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위원회는 지역별 협력대상자원 및 사업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를 유발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